수출용물품매매계약서

계약번호: DW-FDH-ACC-150302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원테코(이하 "을"이라 한다)는 쿠웨이트 KNPC CFR MAB2 Project 내 FDH JV가 발주한 Field Erected Tanks 프로젝트(이하 "Project"라 한다)와 관련하여 기자재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감리 등을 포함한 "갑"의 "Project"에 대한 제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제3조에서 정한 "을"이 생산한 기자재 및 부품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 위해 "물품"의 공급 및 관련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이 "Project" 내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물품 공급의 범위 및 협력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Project" 수행을 원활히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양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Project"의 성공적인 수행을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의 업무범위)

- ① "본 계약서"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은 "을"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을"에게 제3조 ①항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한다.
- ② "갑"은 자신의 지식, 경험 및 식견을 가지고 대금지급에 있어 "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의 업무범위)

- ① "을"은 "Project"상 "물품"의 제조, 인도 및 인도 후 관리에 대한 모든 의무 (예를 들어, "물품"의 제조, 선적전 제3자 검사, 선적, 인도, 현지 면세절차 획득, 하자보증, 설치 및 감리 책임, 제조물 제조자 책임, 손해배상금 지불의무 등)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전 ①항의 업무의 수행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갑"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을"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지식, 경험 및 식견을 가지고 "원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 등)

"물품"의 명세 및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 품명 및 수량 : Storage Tank 설비 관련 기자재 및 부품 류.
 - 세부 항목은 유점 1을 따른다.
 - 2. 납기 : 2015년 12월 30할
 - 3. 상세한 내역, 사양, 포장 및 Marking 등은 "Project" 기준인 유첨 2를 따른다.

제5조 (물품의 인도 등)

- ① "을"은 제 4조 2호 에서 명시한 납기일에 맞추어 CIF Kuwait Port, Kuwait(Incoterms 2010) 로 "물품"을 인도한다.
- ② "을"이 전 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갑"에게 비용 및

"Project" 내 관련 지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 전부를 "갑"에게 美달러화 현금으로 지급 또는 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금액)

본 계약에 정한 "을"의 의무이행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대가로 "갑"은 총 미화 팔백 육만 삼천불 (US\$ 8,063,000.-) (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을"에게 본 계약서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불하기로 하며 그 구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1. 선수금 : 미화 팔십만 육천 삼백불(US\$ 806,300)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
- 2. 선적대금: 미화 오백 구십 육만 육천 육백 이십불 (US\$ 5,966,620) 계약 금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74%)
- 3. 잔금 : 미화 일백 이십 구만 팔십(US\$ 1,290,080) 계약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6%)

제7조 (대금 지불 등)

- ① "갑"은 본 계약서 제 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발효 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을"을 수혜자로 하는 생기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외화 표시 구매 승인서를 발급한다.
- ② "갑"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계약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 1. "선수금": "갑"의 구매승인서발급 후 5 영업일 이내 "을"에게 "선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지정한 美달러화 계좌로 송금.
 - 2. "선적대금": "갑"이 본 계약서 제13조 ①항에서 정한 "을"의 "이행(계약)보 중보험증권"를 수령 및 "물품"의 쿠웨이트 도착 후 "갑"의 "인수증" 발급

- 후 10 영업일 이내 "을"에게 "선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지정한 美달러화 계좌로 송금.
- 3. "잔금": "을"이 "물품"에 대한 쿠웨이트 내 Income Tax Control Office 로부터 Tax Liability 종결 및 Custom Duty Exemption 승인관련 공문 제출후 60 영업일 이내, "을"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지정한 美달러화 계좌로 송금.

제8조 (면책)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을" 자신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지적재산권침해 기타 불법행위 또는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제3자가 "갑"에게 클레임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대금지불거절, 소송제기 등(이하 "클레임 등"이라 한다)을하는 경우, "을"은 이러한 클레임 등으로부터 "갑"을 면책 시켜야 하며 이러한클레임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을"의 전술한 클레임 등의 미해결 또는 해결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예를 들어, 제3자에게 "갑"이 지불한 금액, 새로운 하도급자를 물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하도급자를 변경하여 "Project"를 이행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변호사비용, 검사비, 조사비, Consultant Fee, 소송비용, "갑"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연리 12%에 해당하는 이자 등)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갑"은 그 손해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를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② "곱"은 제3자로부터 수령한 "물품"의 하자 및 "클레임 등" 관련 통지서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하자 및 "클레임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위 손해배상 청구 및 "을"의 클레임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정한 "을"의 의무는 이 계약의 종료, 해지 또는 해제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재 하도급금지)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된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보증)

"을"은 "Project"상의 하자보증기간 동안 "물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 보증기간 중 "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없는 "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하자보증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을"은 본 계약서 체결 일로부터 10년 동안 "물품"의 Spare Parts 또는 그에 동등한 물건의 Availability를 보증한다.

제11조 (양도금지 등)

본 계약상의 일방은 본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 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2조 (통보의무)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반 진행사항을 "갑"에게 수시로 또는 "갑"이 요청할 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담보)

- ① (계약이행보증 담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을"의 모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보증보험금액 미화 이백 사만 오천불(US\$ 2,045,000)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이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를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보험기간은 "본 계약서"의 체결일로부터 "Project"상 "을"의 보증의무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보험기간의 연장) "을"이 "갑"에게 제공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상의보험기간 내에 "Project"상 "을"의 보증의무가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제공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여야 하며, 동 만기일은 전술한 보증의무의 완료시점까지 연장된다. 또한, "갑"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roject"의 일정이 지연되어 "갑"이 상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기한을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14조 (발효 및 해제 등)



- ① "본 계약서"는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 ②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본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갑"에게 손해 (예를 들어,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새로운 하도급자를 물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하도급자를 변경하여 "원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변호사 선임비, Consultant Fee, 검사비, 조사비, 소송비용 등)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 2. "을"의 귀책사유로 "Project"가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 3.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거나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퇴출기업으로의 지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소집통보, 구조조정협약 적용 신청이 있는 경우
- 4. 발행, 배서 또는 지급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제15조 (수정)

본 계약서의 각 조항(본 조항 포함)은 반드시 양당사자의 서면합의로써만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로써 수정, 변경, 삭제되지 않는다.

제16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 심의 합의관할로 한다.

제17조 (원 계약 준용)

"을"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Project"의 계약조건과 제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함을 확약한다. "본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Project" 관련 문서인 유첨2의 "일반약정" 및 "특별약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만일 준용할 규정이 없거나 준용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해당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만일합리적인 기한 내(단, 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법원(法源)을 결정하기로 한다.

<첨부>

- 유첨 1: 공급 물품 리스트

- 유첨 2 : Project Document

"일반약정": PART III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특별약정": PART I - SCOPE OF WORK 및 PART IV - SPECIAL TERM

체결일: 2015년 3월 2일

갑 :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7 대표이사 사장 전 병 일 (인)

을 : 주식회사 윈테코 대표이사 오 창 재

물품공급리스트 (Material List for the eleme া field erected tanks)

- 24

PROJECT NAME: KNPC CFP MAB PROJECT

COMPANY: FDH JV (FLUOR/DAEWOO E&C/HYUNDA! HEAVY INDUSTRY)
CONTRACTOR (Buyer):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DAEWOO")
SUBCONTRACTOR: WINTECO CORPORATION

cei						The second second	
No.	Material / Component	Chit	ά,σ	Amount (USD)	H.S CODE	Country of Origin	Remark
_	Carbon Pipes and Flanges for Field Erected Tanks, ASTM A106/A105	Ton	302	887,000	7304.31-0000	Korea	Internal piping and nozzle for field erected tanks
2	Fabricated Nozzles for Field Erected Tanks	Ton	215	632,000	8404.91-9900	Korea	Manhole, Inlet/outlet nozzle and instrument nozzle for field erected tanks
ю	Stairway and Platform for Field Erected Tanks	Ton	326	798,000	7308.90-9000	Korea	To access to Tank facilities
4	Water spray piping and foam system for Field Erected Tanks	Ton	312	1,375,000	7304.19-0000	Korea	Parts of Firefighting facilities for field erected tanks
cy.	Cathodic Protection system for Field Erected Tanks	Ton	80	1,273,000	8504.40-1090	Korea	To control of corrosion for field erected tanks
9	Earthing material for Field Erected Tanks	營	17	98,000	8504.40.1090	Korea ·	Parts of electric earthing system for field erected tanks
2	Roof Drain System for Field Erected Tanks	D F	32	255,000	7610.90-0020	Korea	Drainage facilities for oil & water at roof for field erected tanks
80	Roof Seal System for Field Erected Tanks	- FALL	16	441,000	8484.10-0000	Korea	Mechanical sealing for floating rood tanks
თ	Gauge Hatch for Field Erected Tanks	EA	40	35,000	7325.10-9990	Korea	To measure of inside condition of Tank
10	Bolt & Nut for Field Erected Tanks	EA	15,000	24,000	7318.15-2000	Korea	To fasten of manhole, nozzle and attachment for field erected tanks
1	Gasket for Field Erected Tanks	EA	454	31,000	8484.10-0000	Korea	To fasten of manhole, nozzle and attachment for field erected tanks
2	Insulation material for Field Erected Tanks	Ton	100	255,000	7326.90-9000	Korea or UAE	To maintain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Tank
13	Welding rod for Field Erected Tanks	Ton	320	784,000	8311.10-9000	Korea	Filler material for Tank body
4	Equipment for construction (Bending Roller, Welding M/C, Cutting M/C etc.)	Ton	80	1,175,000		Korea	For fabrication & construction
15	Plate Fabrication work for free issued material by DAWOO and CIF delivery	Ton	422	(include)	7308.90-9000		Only work for free issued material upon under Dia 4M Tanks
	Total			8,063,000			

1/1